

2024년 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」 시행계획 공고

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4. 6. 7.
경기도지사

1. 신청대상

-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¹⁾으로
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 - 3년 이상 : 공고일 기준(21. 6. 6.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)
 -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(본사, 지점, 제2공장 등 불문)
-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
 -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
 -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

【 고용증가요건 상세 】

- ▶ 평균의 의미 :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
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)
- ▶ 2022. 1월 ~ 2022. 12월 대비 2023. 1월 ~ 2023. 12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

《 평가기준 》

- 평가기간 : '22. 1월 ~ '23. 12월
- '22년도 평균 근로인원(A)
= '22. 1. ~ '22. 12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÷12개월
- '23년도 평균 근로인원(B)
= '23. 1. ~ '23. 12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÷12개월
※ 단,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내역의 건강/장기보험요양 증명으로 산정
- 고용증가인원(C) = '23년도 평균 근로인원(B)-'22년도 평균 근로인원(A)
- 고용증가율(%) = C÷A×100(%)

2. 신청(선정) 제외 대상
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게임,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

3. 인증기업 지원내용

- 인증서 및 현판 수여,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
-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(최대 2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)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
-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-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(탐나는 기업) 제작·홍보
-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

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'24. 6. 7.(금) 09:00 ~ '24. 6. 28.(금) 16:00까지
- 신청방법 : 기업 직접 온라인 접수

- 1) 홈페이지(<http://apply.jobaba.net>)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
- 2)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

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

5. 제출서류

○ 신청서 작성, 출력,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

- [서식1]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
- [서식2]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
- [서식3]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
- [서식4] 기업(개인)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약약서
- [서식5] 사업 신청(선정)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
- [서식6]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부존재 약약서
- [서식7]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○ 증빙서류

-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
 - ※ 귀속년월 2022. 1. ~ 2023. 12. 월별 각 1부
 - ※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(월별) 제출(www.4insure.or.kr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 - ※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
- 최근 2년간 재무제표('22년, '23년) 각 1부
-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(참고 자료 별첨)

6. 심사 및 평가

○ 평가 및 배점 : 총점 100점(정량평가 60점, 정성평가 40점)

분 야	배점	평가 항목	
정량평가 (서류평가)	일자리 성장성	20점	• 평균 고용증가인원(10), 평균 고용증가율(10),
	일자리 질	25점	• 일가정양립제도시행(5), 직원 복리후생(5), 직원 역량강화(2), 장기근속률(5), 정규직 채용 비율(8)
	기업경영의 건전성	10점	• 기업 경영상태(10)
	취약계층 채용 기여	5점	• 장애인 채용 비율(5)
정성평가 (심의위원회 평가)	40점	• CEO 의지(비전,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) 및 기업 운영성과, 성장(발전) 가능성 등 종합검토	

※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(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)

○ 심 사 :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

7.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

○ 인증기간 : 인증일로부터 2년

- (인증 연장)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

○ 인증취소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- ※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

【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】

- 조사기간 : 매년 2회(상하반기) 실시
- 조사내용 : 인증 유효기업 근로자수 증감현황 파악
- 조사결과 활용
 - (경고)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% 이상 감소
 - (인증취소) 근로자 수 증감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

8. 선정 및 통보

- 선 정 : '24. 8월 중 예정
- 결과통지 :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- 인증서 수여식 : '24. 8월 예정
 - 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9. 기타사항

-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 - ※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,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,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

-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요건 변경, 기업합병, 지역 이전 (경기도 외 지역)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각종 증명(빙)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10. 문의처

-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(☎ 031-8008-8109)
-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(☎ 031-270-9691 / 9694 / 9695)